

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64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7. 3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(2020. 6. 4.시행)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책무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(안 제3조)

다. 지원단의 구성, 단장의 임무, 실무팀 편성 및 임무(안 제4조 ~ 안 제6조)

라.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(안 제7조)

마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(안 제8조)

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, 제17조의2

4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협의완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여성가족과-20933호, 2020. 5. 26.)

라. 입법예고: 2020. 5. 25. ~ 6. 15.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4조(지원단의 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

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 편성 및 임무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2. 모집·배치팀
3. 활동관리팀
4. 활동지원팀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

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대책본부장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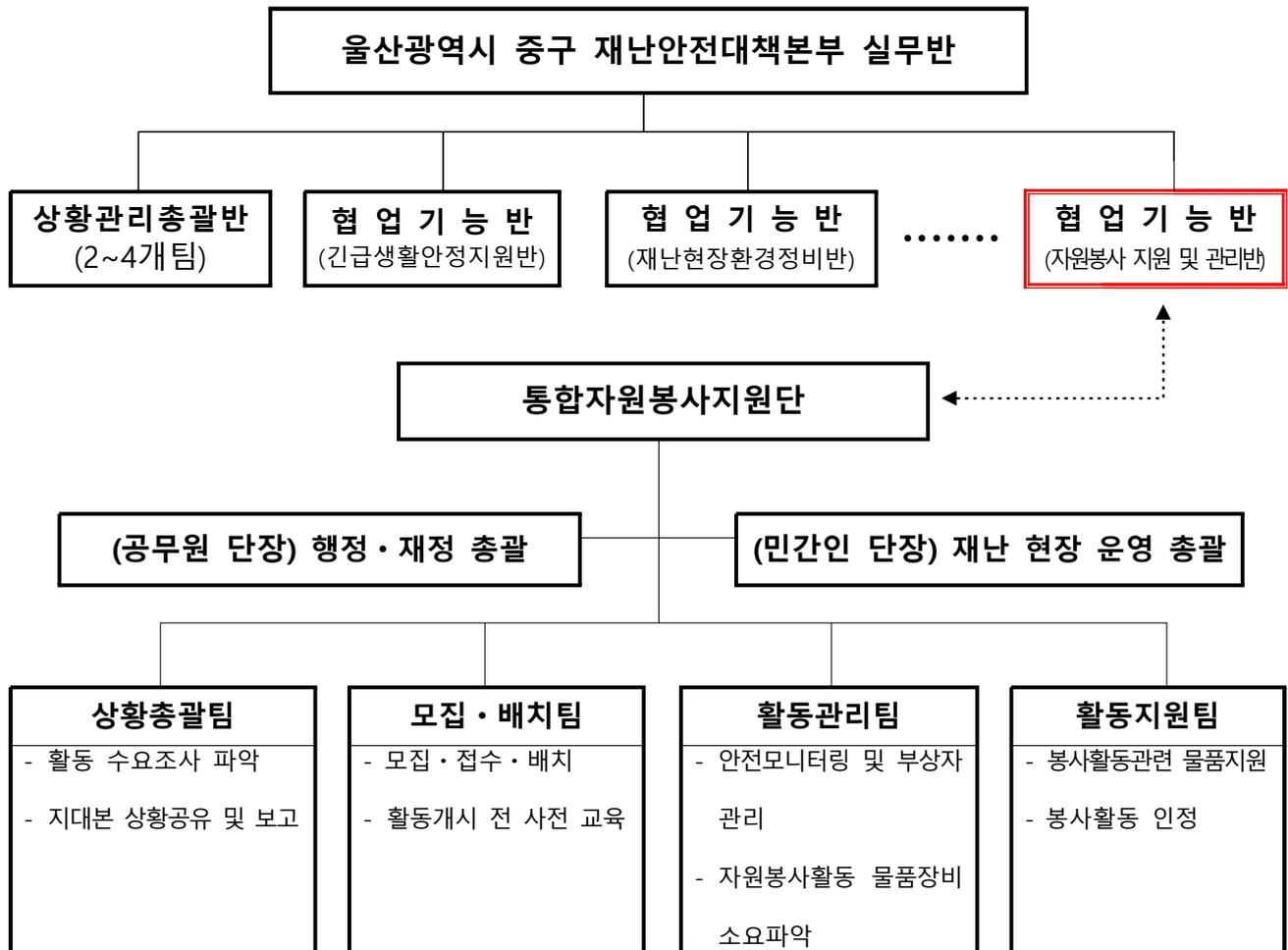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구 분		직 위	담 당 사 무
통합 자원 봉사 지원 단장	공무원	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행·재정 지원 사항 총괄 ○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 사항 발굴·지원
	민간인	자원봉사센터의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관련 현장 총괄
실무 팀	상황 총괄팀	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필요사항 발굴 ○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공유 및 보고 ○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, 행·재정 지원
		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○ 자원봉사활동 분야, 인원 등 수요 조사
	모집· 배치팀	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총괄
	활동 관리팀	자원봉사센터 기획홍보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○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, 장비 소요 파악
	활동 지원팀	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주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 현장 부족한 자원·예산 파악 ○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
		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○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○ 봉사활동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

비 고

-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근거법규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등록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는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3. 작성자

- 소 속: 주민생활지원과
- 직 급: 지방사회복지주사
- 이 름: 이미영
- 연락처: (052)290-3563